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1월 29일
- 회부일 : 2007년 1월 30일
- 보류일 : 2007년 2월 12일
- 재회부일 : 2007년 3월 21일

2 제안이유

-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 하고자 함.

3**주요내용**

- “혁신기획단” 을 “창의혁신단”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인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안 제4조)
-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 (안 제5조)
-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 변경 (안 제9조)

4**참고사항**

- 가. 법적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2007. 2. 26)
서울시 조직담당관-2233(2007. 3. 6)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7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실현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을 변경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으로 제도나 방법, 조직 등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 2월 26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연장,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로 부터 혁신전담기구의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 협조요청이 있어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또한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⑥삭제 <2004.12.18>